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시 주의사항

이민
송주연 변호사

취업 스폰 회사 근무 이력, 범죄기록 여부 잘 살펴야

문: 취업영주권을 받아 5년이 지난 고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한 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니 큰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 것 같아 변호사나 다른 기관의 도움 없이 신청서 준비를 해 보려고 한다. 시민권 신청 시 어떤 점을 주의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 5년을 지내야 하며, 이 기간에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의 총합이 2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 번의 해외여행이 연 이어 6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또한 남세의 의무를 잘 이행했다는 증거로 5년간 보고된 개인소득세를 제출해야 하고,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90일을 최소 주한 주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볼 수 있고, 미국의 역사와 정부 그리고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3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자주한 경우 영주권 획득 후 3년 뒤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는 두 부부의 결혼이 진실이라는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위와 같이 기본 조건을 살펴 모든 조건에 부합하였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서를 쉽게 제출하는 경우를 많아 본다. 20장에 달하는 시민권 신청서를 살펴보면 개인 신청자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없다. 신청 장기록, 해외 여행기록, 배우자와 자녀정보 등이 기재되고, 결격사유 가 있는지를 보는 단답형의 질문들에 예나 아니오로 답변을 하면 된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까지는 초기 상태로 신청서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신청자들이 시민권 신청서는 쉽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을 관정하는 이민국 실사관은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심사관의 매뉴얼에 따르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실사관은 신청자의 A File을 모두 검토하고 시민권 심사에 임하게 되어 있다. A File이란 서 어느 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근무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근무를 할 수 없었던 탓에 이유를 제출하기 어렵지 않을까 본다. 혹은 5년간의 기록만 제출하면 되는데, 과거의 모든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단, 영주권 신청서에 들어간 기록과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질문자와 같이 취업영주권 획득 청을 하는 경우라면, 과거 5년의 세금기록과 직장기록을 제출했을 때 취업영주권을 획득한 후 바로 어느 직장에서 근무했는지가 보이게 된다.

취업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신청자이므로 영주권 획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영주권이 승인된 것이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서에 제출된 내용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영주권 승인의 태당 여부부터 재검토가 될 수 있다.

물론, 취업영주권을 획득한 신청자가 영주권 획득 후 스폰서 회사에 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근무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근무를 할 수 없었던 탓에 이유를 제출하기 어렵지 않을까 본다. 혹은 5년간의 기록만 제출하면 되는데, 과거의 모든 경력이 제출되고, 이때 영주권 신청서 일절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기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nyopinion@koreadail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시 주의사항

취업 스폰 회사 근무 이력, 범죄기록 여부 잘 살펴야

이민
송주연 변호사

문: 취업영주권을 받아 5년이 지났고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한 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니 큰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 것 같아 변호사나 다른 기관의 도움 없이 신청서 준비를 해 보려고 한다. 시민권 신청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 5년을 지내야 하며, 이 기간에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의 총합이 2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 번의 해외여행이 있어 6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또한 남세의 의무를 잘 이행했다는 증거로 5년간 보고된 개인소득세를 제출해야 하고,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90일을 최소 거주한 주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볼 수 있고, 미국의 역사와 정부 그리고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3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자주한 경우 영주권 획득 후 3년 뒤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는 두 부부의 결혼이 진실뿐이라는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위와 같이 기본 조건을 살펴 모든 조건에 부합하였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서를 쉽게 제출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20장에 달하는 시민권 신청서를 살펴보면 개인 신청자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없다. 신청자의 지난 5년간의 거주기록과 직장기록, 해외 여행기록, 배우자와 자녀정보 등이 기재되고, 결격사유 가 있는지를 보는 단답형의 질문들에 예나 아니오로 답변을 하면 된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까지는 초기 상태로 신청서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신청자들이 시민권 신청서는 쉽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을 관정하는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심사관의 매뉴얼에 따르면 시민권을 검토하는 심사관은 신청자의 A File을 모두 검토하고 시민권 심사에 임하게 되어 있다. A File이란 신청자의 과거 이민 관련 신청에 해 접수된 모든 서류를 말하며, 여기에는 당연히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 일절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권 신청서의 답변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단, 영주권 신청서에 들어간 기록과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질문자와 같이 취업영주권 획득 청을 하는 경우라면, 과거 5년의 세

을 한 후 바로 5년 뒤에 시민권 신청서에 들어간 기록과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카드 갱신에서 근무했는지가 보이게 된다. 취업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신청자이므로 영주권 획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영주권이 승인된 것이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서에 제출된 내용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영주권 승인의 타당 여부부터 재검토가 될 수 있다.

물론, 취업영주권을 획득한 신청자가 영주권 획득 후 스폰서 회사에 서 어느 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근무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근무를 할 수 없었던 탓에 이유를 제출하기 어렵지 않을까 본다. 혹은 5년간의 기록만 제출하면 되는데, 과거의 모든 경력이 제출되고, 이때 영주권 신

증명서는 건강·법률·세무·보험·기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hyopinion@koreadail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